

간호부 복무 규정

연세의료원 교육용 가상 규정 — 실제 규정이 아니며 Copilot Studio 실습(지식·RAG)용으로 작성된 문서입니다. 시행 2026. 1. 1.

제1장 총칙

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간호부 소속 직원의 근무 형태, 휴가 및 복무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적용 범위)

간호부 소속 전 직원(병동·외래·특수부서 간호사 및 간호지원 인력)에 적용한다.

제2장 근무

제5조 (근무 형태)

- 3교대 근무 — 주간(Day) 07:00~15:00 / 저녁(Evening) 15:00~23:00 / 야간(Night) 23:00~익일 07:00
- 상근 근무 — 08:30~17:30 (외래·행정 지원 부서)
- 야간 전담 근무 — 본인 신청과 부서장 승인에 의한다

제6조 (근무표 작성)

근무표는 수간호사가 전월 20일까지 작성하여 공지한다. 근무 변경은 변경 희망일 3일 전까지 근무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수간호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7조 (야간 근무 후 휴게)

야간 근무 종료 후 최소 24시간의 휴게를 부여한다. 야간 근무는 연속 3일을 초과하여 편성할 수 없다.

제3장 휴가

제17조 (연차휴가)

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하며, 1년간 80%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 15일을 부여한다.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직원은 2년마다 1일을 가산한다.

제18조 (연차휴가의 이월)

연차휴가는 당해 연도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없다. 다만 부서 사정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최대 5일까지 다음 연도 상반기(6월 30일)까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 이월 신청은 매년 12월 15일까지 한다.

제19조 (휴가 신청 절차)

- 연차 — 사용 3일 전까지 그룹웨어 신청, 수간호사 승인
- 병가 — 유선 보고 후 3일 이내 진단서 등 증빙 제출 (연 60일 한도)
- 경조 휴가 — 결혼 본인 5일, 배우자 출산 10일, 직계 존속 사망 5일

제4장 복무

제23조 (당직)

야간 당직 관리자는 간호국 당직표에 따르며, 당직 중 발생한 주요 사항은 익일 오전 간호국에 보고한다.

제24조 (교육 이수)

법정 의무 교육 및 간호부 필수 교육은 매년 지정 기한 내 이수하여야 한다. 미이수자는 승진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다.

부칙

이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